

의안번호	2213104
의 퇴 인	이용선의원
회 답 일	2025.11.26.
추계번호	25D5166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3(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)	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함)을 법인으로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3(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교류·협력의 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함)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안 제24조의3제4항¹⁾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, 수익사업의 이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서 재단의 설립·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재단의 조직규모,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1)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: 2213708)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수익사업의 이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에 따르면,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사업과 일부 유사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의 2024년 지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- 참고로, 개정안 부칙 제2조²⁾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청산되며, 청산법인의 권리·의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함

[표 1]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·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결산현황: 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	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
인건비	9,355	2,151
기본경비	1,589	772
사업비	24,952	958
합계	35,896	3,881

주: 상기의 결산금액은 인건비, 기본경비, 사업비를 합산한 것임

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부칙 제2조(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, 청산법인의 권리·의무는 제24조의3의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